

4대 보험,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알바노동자 필수상식③

김재섭 알바노조 경희대 분회 분회장

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4대 보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보험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르게, 국가가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다.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히 국가가 시행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간보험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고, 가입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반면에 사회보험은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공공성이 더 강조된다. 더불어 사회보험이 유지되려면 재정적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보험의 목적인 국민을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국민은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납부해야한다.

4대 보험의 개념에 대해 다 설명하기에는 지면에 한계가 있다. 뒤에 살펴볼 내용 이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4대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보험료 계산과 보험급여까지 확인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자주 겪는 문제만 짚어 보겠다. 알바 노동자 썬썬 씨는 편의점 알바 노동을 하고 있다. 썬썬 씨는 근로계약서도 썼고, 최저임금도 보장받고 주휴수당도 받는다. 하지만 사장님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월급에서 돈이 나간다. 그러니 보험은 듣지 말자"라고 한 말을 믿고 4대 보험 가입 없이 일했다. 그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6개월 후 해고당했다. 사장님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물론 일부는 사실이다. 보험료를 월급에서 납부하니 말이다. 쉽게 이야기 해보자.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알바노동자가 국민연금으로 얼마 낼까? 4.5%를 근로자가, 4.5%를 사용자가 납부한다. 즉 근로자는 4만 5천 원만 내면 된다. 그렇다. 사실 국민연금은 밥 한 끼 먹을 돈이 아까운 우리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의사에게 진료 받을 때 "일하다가 다쳤어요"라고 강조해서 말하자. 이 내용이 첫 진료기록에 남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본성격	소득보장장기보험	의료보장단기보험	실업고용중기보험	산재보상단기보험
납부율	근로자 4.5% 사용자 4.5%	근로자 2.995% 사용자 2.995%	근로자 0.65% 사용자 0.65%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
관리단위	개인별관리	사업장·세대별관리	사업	사업장

하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100보 양보해서 말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있다면 납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 내도 좋다. 단, 독립을 했거나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100만원 벌 때 3만원 정도를 납부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5.99%로 사업자가 2.995%, 노동자가 2.995%를 납부한다.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사실 가장 핵심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다. 고용보험은 0.65%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6개월 이상 일한 상태에서 해고당하거나, 정리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일하다가 2개월 쉬고, 다시 3개월 일해도 누적된다. 심지어

등록만 하면 하루 단위로도 누적된다. 돈도 얼마 안 들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듣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 사직서를 쓰거나, 개인의 책임으로 해고된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면 병원비, 임원비 경우에 따라 생계비도 지급된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전액 사장님이 내는 것이니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자. 단 산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일하다 다치거나, 일로 인해서 다치면 대부분 산재적용이 된다. 사장님이 병원비를 주면서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 받으라고 하면 그 돈으로 치료받고,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배달아르바이트의 경우 오토바이 사고가 많은데,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꼭 산재보험을 적용받자.

산재와 관련된 포인트는 두 가지다. 일단, 의사에게 진료 받을 때 "일하

다가 다쳤어요"라고 강조해서 말하자. 이 내용이 첫 진료기록에 남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진료 받고 병원 카운터에서 "산재 받으려고 하는데요"라고 말하자. 이 두 마디면 이후에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 꼭 기억하길 바란다.

썬썬 씨는 사장님의 말에 속아서 약 6만원을 아꼈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 만약 재고정리를 하다가 허리라도 다쳤다면 산재적용도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우선 4대 보험 모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가입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소급 적용된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속인 만큼, 지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시 적용 받을 수 있다. 길게 설명했지만 "알바도 적용되는 것이 맞아?"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4대 보험 가입대상에서 노동자 부분을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건강보험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라고 되어 있다. 알바를 하고 있는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권리인 만큼 겁내지 말자!

참여마당

이예찬
(중국어학 2014)



카톡 검열, 국가안보의 길인가 국민 탄압인가

'카카오톡 검열'이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이버 상(모바일 상)에서 벌어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지나쳤다고 카카오톡 검열은 이를 단속하기 위한 일종의 모니터링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영화 <변호인>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이 대목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정신을 잘 드러내 준다. 찬성 측은 이를 논거삼아 현재 상황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횡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란 국민의 동의하에 세워진 국가의 통치체제를 반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한 극좌파의 무차별적 인신공격인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규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사상적 자유를 내포하는 양심적 자유는 허용되 자신의 특정 사상을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이 그들의 주된 논거다.

그러나 사실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니 좌우 이념간의 대결구도와 같은 거창한 것들이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나도 그 검열 대상이 되는가?'를 걱정한다. 현재 정부는 '검찰을 통하여 수색영장을 발부하면 카카오톡 상에서 발생한 특정 대상 사이의 대화는 검열이 가능하나 이는 실시간 감청이 아니며 범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골이 깊어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대중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였고 대대적인 '사이버 망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입장의 시비 여부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검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를 통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카카오톡 검열이 과연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가, 국민의 권리침해인가'로 정리될 수 있겠다.

현대적 '국가'는 그 존재근거를 국민과 정부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되었다는 '사회 계약론'에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은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만 사용되어야 하며 절대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분명 현 정부의 조치는 다소 극단적이며 과격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밝힌 입장대로 정말 사이버 상에서 일명 '종북'이라 속칭되는 우리가 정권전복과 용공주의 실현을 위한 반정부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면 말은 달라진다. 다시 말해 정부가 부패한 모습을 보일 때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이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것은 애국의 길이 되지만 국가체제를 뒤집으려 하는 시도는 유래 없는 대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체제란 과거와 현재에 있어 국가존재의 근본이며 미래로 나아가 방향이기에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켜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특정한 편에서 판단하기 이전에 명심할 점은 진정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도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절대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내에서 보편타당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면에서 이어짐

이번은 대심문관을 자신의 '이론-분신'으로 내세우며 스스로를 신을 죽였지만, 정작 현실에서 아버지가 살해되자 극도로 당황한다. 아버지와 형 사이에 참극이 발생할 것임을 예감했음에도 그냥 떠나버린 죄("기대의 권리"), 자신의 '실제-분신'인 스테르자코프에게 은연중에 살인을 교사했을 뿐더러 그의 자살을 방치한 죄 등으로 고뇌하면서 그는 완전히 미쳐버린다. 실상 문제는 작가가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도발적인 사상과 함께 그에게 선사한 '선악의 피안'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 즉,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는 자유이다. 이번이 '위대한 죄인'인 것은 죄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향유한 자유와 양심의 크기(죄의식) 때문이다.

분석적 '이성'의 육화인 이반과 나란히 '감성'의 육화인 드미트리, '영성'의 육화인 알료샤가 각기 죄와 벌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으나 죽이고 싶었다는 이유로 천부살해의 누명을



소설의 근간을 이루는 신구사례의 테마는 정치적 차원(차르를 죽이다: 혁명)과 형이상학적 차원(신을 죽이다:무신론)을 아우른다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한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쓰는 수난을 겪는다. 알료샤는 '관념'에 맞서는 '삶'으로서 조시마 장로의 "시체 썩는 냄새"("기적"에의 유혹)를 극복하고 소설 속 그리스도로 거듭난다. 또 다른 카라마조프인 사생아 스테르자코프는 러시아식 허무주의의 심연을 드러내 보인다. 결국 한 집안의 참극을 통해 작가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증명하며 우리를 구원(=신)으로 이끌고자 한다.

이렇게 총체적인 화해와 사랑을 역

설하는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은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은 유형수에 평생 가난과 간질 병과 도박벽에 시달린 도스토예프스키가 스톨네 살 연하의 아내, 어린 아들딸과 더불어 인생의 황금시대를 구가하며 쓴 소설이다. 젊은 카라마조프들과 소설 속 소년들은 작가 자신의 아이들인바, 이 결과는 정녕 그들이 살아갈 미래에 바쳐진 '위대한 유산'이다.

나를 찾아 떠나는 1박 2일

학생지원처 여학생과에서는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이해 능력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4.11.7.(금) ~ 11.8.(토)
- 대상 : 서울캠퍼스 남녀재학생 16명(남 8명, 여 8명)

※ 참가대상자 50%는 신입생

- 장소 : 청평자연휴양림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
 - ※ 예치금 1만원 (프로그램 참가시 돌려드립니다)
 - ※ 우리은행 126-177170-02501 (예금주 : 김미경)

- 신청서 : 대학본부 공지사항과 여학생과 홈페이지 (<http://web.khu.ac.kr/~wss0208>)

- 접수기간 : ~ 2014.11.6.(목)
- 문의 : 02-961-0208 / khsa0043@khu.ac.kr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